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45호 2022. 2. 16.(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22-21호 거창군 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관광택시 운임 요금 고시 3
- 거창군 고시 제2022-23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22-250호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6
- 거창군 공고 제2022-260호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거창군 공고 제2022-269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43
- 거창군 공고 제2022-274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51
- 거창군 공고 제2022-276호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3

거창군 공고 제2022-277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5

거창군 공고 제2022-282호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86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관광택시 운임·요금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제3조에 의거, 거창 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거창군 관광택시 운임·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거창군수

적용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제3조(운임·요금 체계 등)

시행일 : 2022. 2. 14

적용대상 : 관외주민등록 관광객으로 사전예약접수에 의한 관광택시 이용자

※ 본 고시는 거창관광택시 사전예약 이용자 외 현장모객 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창군 관광택시 운영 및 요금

- 운영요금

운영시간	3시간 코스	5시간 코스	8시간 코스	비고
이용요금	60,000원	100,000원	150,000원	
이용자 부담금	30,000원	50,000원	75,000원	
거창군 지원금	30,000원	50,000원	75,000원	

※ 추가요금은 일반택시요금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며, 전액 승객부담임.

- 운행구역 : 거창군 관내(주요 관광지)
- 이용방법 : 사전예약(거창군 문화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 문의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055-940-3420)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8-3 등 6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2길 34-3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0-5, 562-2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8-3	20220216	20090401	마을 남서 뒷산이 말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2060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자하2길 151	20220216	20180502	거창부사 홍세영에 의해 붙여졌다고 전해지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에서 분기되는 도로에 일련번호를 활용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75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원신기길 81	20220216	20090401	신기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550-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로 920-10	20220216	20091228	신원면 청수리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리 594-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례길 242-6	20110729	20090401	행정구역명 구례를 이용하여 구례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78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아주1길 405-96	20220216	20090401	고려말 거제현의 속현인 아주현에서 마을이름이 생겼다가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2길 34-3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2길 34-33	20220216	20090401	마을 뒷산에 용의 머리 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변경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조항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부과 징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부담금 산정기준(안 제2조 ~ 제3조)
- 부담금 면제(안 제4조)

-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다수의 원인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부담금의 정산, 과오납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2. 11. ~ 2022. 3. 3.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수도
 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26)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라. 전화 055-940-8425, 팩스 055-940-8409

붙임 :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제공자의 부담금 산정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정
2.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3. 세부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음

제3조(행위자의 부담금 산정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 제2조를 준용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3. 급수차의 사용경비: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 차량경비, 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하여 산정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에 따라 산정
6. 홍보비: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하여 산정.
7. 작업시간: 수도시설 복구를 위한 출동시간부터 수도시설 복구완료 후 1시간까지로 산정,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

제4조(면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제공자와 행위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먼저 부과·징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제6조(다수의 원인자)** ① 군수는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나누어 부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책임이 있는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 제3호 관련)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단위사업비”란 거창군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순자산”이란 거창군이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거창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른다.
3. “시설용량”이란 거창군의 자체 정수용량과 광역상수도의 광역배분계획량의 합을 말한다.
4. “수돗물사용량”이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거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5.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 소요 공사비용을 말하며,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6. 단위사업비는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7.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거창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순자산과 시설용량을 재적용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3조 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 \times 3600$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256ap^{1/2}$

$Q1$ = 초당 손실수량(m^3/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m^3/hr)
C = 유량계수($Ca \times Cv$)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2)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2)
(수두 10m는 수압 $1kg/cm^2$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3)	A = 면적(m^2)	L = 연장 (m)
---------------------	-------------------	------------------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상수도 원안자부담금 산장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조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면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를 위한 조치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및 이로 인해 다른 시설물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시설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에게 파손원인자 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판단기준) 제2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부담금의 면제)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 급수설비
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

제5조(수도공사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며 실시계 확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때로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부과·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③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결정기한까지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한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협약·처분은 이 규칙에 따른 협약·처분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5조제3항 관련)

거창군 ○○읍(면) ○○리(동) ○○번지의 ○○필지상의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거창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인자인 ○○사업 ○○○(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의 원칙)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2. 단위사업비 부담금(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단위사업비 부담금(천원)	단위사업비(천원/톤)	수돗물사용량(톤/일)	비고

3. 추가사업비

추가사업비(천원)	사업위치	사업량	비고(관종 등)

4.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득하여 “을”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추가사업의 범위는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공사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부대비 등이며, 급수전 인입공사는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갑”에게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분	납부금액	비율(%)	납부시기	납부기한
합계				
1차			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년 월 일)	고지일로부터 30일
2차			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년 월 일)	고지일로부터 30일
3차			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년 월 일)	고지일로부터 30일
4차			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년 월 일) (단 용수공급개시이전)	고지일로부터 30일

제5조(부담금의 정산) “을”이 “갑”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면적 확대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사항 외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단,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의 부담으로 시행한 상수도시설은 준공과 함께 “갑”의 자산으로 귀속하며, “갑”이 운영·관리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시기) “을”이 “갑”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완료하고 “을”이 설치한 시설 또는 사업 지구 내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점검이 완료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②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③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한 경우
-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를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갑”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성 명 : 거 창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별지 제2호서식]

파손원인자 확인서(제5조제4항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남/여)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mm()부분을 년 월 일 시에서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수 발생 시간 :
단수및통수시간 :
누 수 구 경 :
파 손 상 태 :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현장소장 :
전화번호 :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제5조제5항 관련)

연번	신청위치	원 인 자			납 부 현 황			비고
		주 소	성 명	(남/여)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일	

[별지 제4호서식]

파손자 관리대장(제5조제5항 관련)

연번	파손현황				파손자 현황			원인자부담금				처분사항			비고
	일시	위치	구경	누수량	주소	성명	(남/여)	계	공사비	누수손료	기타	납기	징수	독촉	

관계법령(발췌)

□ 「수도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환경부)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1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

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세 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1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률을 높이고 비대면 민원발급을 활성화 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군민편의 서비스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안 별표 2)

1) 증명서 12종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2종: 200원⇒면제

3)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8종: 500원⇒면제

(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각 폐쇄증명 포함)

4) 제적등본: 500원⇒면제

5) 제적초본: 300원⇒면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라. 전화)055-940-3252, 팩스)055-940-8907, 이메일)cyj00@korea.kr

붙 임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1통	200	면제
2)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500	면제
3) 제적등본	1통	500	면제
4) 제적초본	1통	300	면제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500	
	연도 추가	100	
6) 토지(임야)대장	1통	300	
	추가 1장당	100	
7) 건축물대장	1통	300	
8) 자동차등록원부	1통	2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300	
10) 농지원부(관내)	1통	500	
1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500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5호, 2022. 1. 19., 일부개정]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증명서 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발급의 범위가 제한된다.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시행 2021. 1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1호, 2021. 11. 1., 일부개정.]

1.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113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5	불필요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요	
	장애인증명서	1	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요	
농촌	농지원부	1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필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1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3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 군복무말자, 면제자, 제1국민역			
지방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1	필요	개정
건축 (법원)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적	제적등본	1	필요	
	제적초본	1	필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교육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성적증명서	1	필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요	
	제적증명서	1	필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 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 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요	
	휴업사실증명	1	필요	
	폐업사실증명	1	필요	
	납세증명서	1	필요	
	납세사실증명	1	필요	
	소득금액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원사업장 증명	1	필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말정산용)	1	필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건강보험 자격특실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요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2	필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요	
	여권실효확인서(국/영)	2	필요	
	여권정보증명서	1	필요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및 환경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을 개선하고,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산정방법 개선,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시기 명확화,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하여 불합리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조례안 제20조 제1항 4호)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 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군홈페이지) 등에도 공고
-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방법 개선(조례안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 【별표 5】)
산술평균 → 기하평균(물가상승에 적합)
-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시기 명확화(조례안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4항)
건축물 인·허가(부과) → 인·허가(개산액 통보), 준공신청시(최종부과)

○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안자부담금 감면 (조례안 제20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2. 16. ~ 2022. 3. 8.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26)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라. 전화 055-940-8435, 팩스 055-940-8409

붙임 :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조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도 공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준공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설건축물(제20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존치기간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1년 이하: 50퍼센트
2. 1년 초과 3년 이하: 30퍼센트

제31조 조 제목 “(행정위탁)”을 “(행정협약)”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 인가 또는 승인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4에 따름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u>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u>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u>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u> 가. <u>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때 부과한다.</u> <p>나. (생략)</p> <p>② 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4에 따름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u>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군홈페이지)등에도 공고</u>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u>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u> 가. <u>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u> <p>나. (현행과 같음)</p> <p>② 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신 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까지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행정위탁)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준공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가설건축물(제20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존치기간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1년 이하: 50퍼센트
2. 1년 초과 3년 이하: 30퍼센트

제31조(행정협약)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bigcirc \text{ m}^3\text{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현행)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개정안)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신설)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거창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2. 02. 15. ~ 2022. 03. 06.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3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

2) 전화번호 : 055)940-3602, FAX : 055)940-3579

3) 전자우편 : hazagu@korea.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건축 조례 제 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의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이상”을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으로 한다.

제41조 제2항의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 제3항의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

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 제4항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

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 마. 삭제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높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5. 7. 6.>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5. 7. 6., 2016. 5. 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거창군 거창사과 용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거창사과 용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거창사과 용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거창사과 용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거창사과 용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 거창사과 용복합센터의 운영을 정함(안 제4조)
- 거창사과 용복합센터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6조 ~ 제7조)
- 거창사과 용복합센터의 위원회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8조 ~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2. 15. ~ 2022. 3. 7.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47)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라. 전화 055-940-8152, 팩스 055-940-822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사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시설)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사과(이하 “거창사과”)와 거창사과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이하 “가공상품”이라 한다)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과 문화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에 둔다.

② 융복합센터는 가공장, 판매장, 체험 및 교육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제3조(기능) 융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유통·전시·판매·홍보
2.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복합문화사업
3.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유통·전시·판매·홍보
4. 그 밖에 융복합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체험료 등)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용자에게 재료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

여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행복농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사과 생산·유통·가공·출하 관련기관·생산자단체의 대표자

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농촌융복합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등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융복합센터 운영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지구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일괄개정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호이동2014.5.28)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후단삭제 2014.5.28)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6.12)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다. 가공시설 이용, 이용료, 이용제한을 정함(안 제3조~제7조)

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정함(안 제8조~제13조)

마. 운영위탁을 정함(안 제14조)

바.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신설(안 제15조)

사. 법령 및 조례 재기개 등 삭제(현행 제3조·제8조·제9조·제16조~제18조)

- 정의, 실비변상, 관리운영, 위탁기간, 준용, 시행규칙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2. 15. ~ 2022. 3. 7. / 20일간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3. 7.(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우) 50147

○ 전화 : 055)940-8151, FAX : 055)940-8229

이메일 : agri907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가공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③ 가공센터에는 농산물의 가공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이하 “가공 시설”이라 한다)을 갖추어 둔다.

제3조(가공센터의 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사무소 소재지를 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다만, 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 ②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1. 기기 구입가격
2.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3. 제품의 판매가격
4. 가공물량
5. 공공요금
6. 농업인들의 부담

제6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이용 시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가공시설의 적정한 가공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
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
5. 가공시설의 이용료
7.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위탁)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법인 등이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나. 관련조문 : 제2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세출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합계
군비	185	185	185	185	185	925

3. 관련 의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 925백만원

-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작성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거창군수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2019.12.25.)에 따라 관련 정의 및 책무 등 조례에 반영 현행화
-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2018. 1.31.) 됨에 따라 아동보호 관련 사항 분리를 통한 효과성 있는 여성보호 지원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기 준)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변 경)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총칙 명시 / 안 제1조~제3조
-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 안 제4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전반 규정 / 안 제5조~제12조

-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안 제13조
- 여성폭력방지 관련 지원 및 비밀준수의 의무 부여 / 안 제14조~제17조

3. 붙임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복나눔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복나눔과)
- 전화 : 055)940-3153
- 팩스 : 055)940-3739
- 이메일 : kjw0809@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종사자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7. 30., 2015. 6. 22., 2017. 12. 12., 2020. 6. 9.>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